

## 4. 소득세법중개정법률

법률 제 5,552호 1998. 9. 16

###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고금리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금융소득자에 대한 공평과세를 기하는 한편, 세수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20 퍼센트에서 22퍼센트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.

※시행일 :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(1998.10.1) <법제처 제공>

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2조제1항제1호가목(2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(2)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원천징수세율(이 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제129조제1항 제1호다목의 세율을 말하며, 배당소득금액의 경우에는 제129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

제129조제1항제1호가목을 삭제하고, 동호 다목중 “100분의 15”를 “100분의 22”로 한다.

제129조제1항제2호중 “100분의 15”를 “100

분의 20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) ①제62조제1항제1호가목(2)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.

②제1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

터 적용한다. 다만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**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농어촌특별세법**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이자·배당소득에 다음 각목의 1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

가.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2

나.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

②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중 “100분의 20”을 “100분의 22”로 한다.

부칙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부칙 제12조제4항제2호중 “제2항”을 “소득

세법 제 129조제1항제1호다목 및 동항제2호”로 한다.

**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)①**

부칙 제3조제1항의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 다만,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②부칙 제3조제2항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 다만,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.